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2023.04.13.



제 1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 32조 및 이사회 규정 제 2조 3항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조 (권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 제1항,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제 2장 위원회의 구성

제 4조 (구성 및 위원장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제7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
제 5조 (임기)

위원의 임기는 해당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하며, 해당 이사가 재선임 될 경우 연임할 수 있다.

제 3장 위원회의 운영

제 6조 (소집 및 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소집 사유를 밝히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단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위 절차를 생략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8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- ② 사외이사후보군 관리 등 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9조 (관계자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0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회의 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1조 (규정의 개정)

- ①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- ②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 결의로 별도 세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